

의안번호	제41호
의결 년월일	2026. 4. 22. (제337회)

금산군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출자	금산군수
제출년월일	2026. 4. 10.

금산군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41호
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6. 4. 10.
제 출 자 : 금 산 군 수

1. 개정이유

- 조례 상 금산군 문화의 집의 명칭을 현행화*하고 운영기준을 명확히 하여 금산군 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도모하고자 함

* 금산선유원(구 금산문화의집) 준공(2025. 7.)

2. 주요내용

- 금산군 문화의 집 명칭 및 위치 현행화(안 제2조)
- 용어의 정비(안 제3조)
- 금산군 문화의 집 무료개방 원칙임을 명시(안 제6조)
- 개방제한 사유 및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정비(안 제7조~제9조)
- 사용료 납부 및 반환, 감면에 관한 조항 삭제(안 제10조~제11조)
- 휴관일에 관한 사항 정비(안 제19조)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
- 예산조치 : 시설 운영 방식의 근본적인 변경이나 사업확대가 수반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
- 기 타
 -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 : 해당없음(기획예산과-2655)
 -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(기획예산과-2642)
 -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(가족정책과-7179)
 - 입법예고(2026. 2. 10. ~ 2026. 3. 3.) : 제출의견 없음

금산군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금산군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“금산문화의 집”과 “추부문화의 집”(이하 “문화의 집”이라 한다)”을 “금산군 문화의 집”으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명칭 및 위치) 금산군 문화의 집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금산선유원: 금산군 금산읍 방아동4길 17
2. 추부문화의 집: 금산군 추부면 하마전로 31

제3조제1호 중 “문화사랑방,문화관람실, 그 밖에 안내데스크 등을 설치한 주민이용”을 “문화사랑방, 문화관람실 등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문화관람실을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”을 “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문화의 집”을 “금산군 문화의 집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문화예술 진흥”을 “지방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”으로 한다.
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문화의 집”을 “금산군 문화의 집”으로, “프로그램운영”을 “프로그램 운영”으로 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시설개방) 금산군 문화의 집은 무료로 개방한다.

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”을 “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산군 문화의 집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천재지변,”을 “천재지변이나”로, “불가능 할 때”를 “불가능한 경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시설의 유지·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

3. 그 밖에 군수가 개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군수는 금산군 문화의 집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시설을 일정 기간 대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군수는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
③ 사용허가 신청서, 사용허가 변경 신청서 및 사용허가서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9조의 제목 “(허가취소 등)”을 “(사용허가취소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”을 “해당

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승인하지 않거나, 이미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시킬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이 조례시행규칙을 위반하였을 때”를 “규칙을 위반한 경우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때”를 “경우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사용할 때”를 “사용하는 경우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제6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6호(종전의 제4호) 중 “때”를 “경우”로 한다.

4. 정치적·종교적 행위나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

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사용자부담”을 “사용자 부담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사용기간만료”를 “사용기간 만료”로, “사용자부담”을 “사용자 부담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사용기간중”을 “사용기간 중”으로 한다.

제16조의 제목“(운영위원회)”를“(금산군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 설치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문화의 집”을 “금산군 문화의 집”으로, “운영위원회”를 “금산군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위원회”를 “운영위원회”로 한다.

제17조제1항 중 “문화의 집”을 “금산군 문화의 집”으로 한다.

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9조(휴관일) ① 금산군 문화의 집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공휴일
2. 그 밖에 군수가 금산군 문화의 집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

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

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군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.

제20조 중 “문화의 집”을 “금산군 문화의 집”으로 한다.

제21조 중 “사용료 및 변상금”을 “변상금”으로 한다.

제22조를 삭제한다.

별표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의 집 내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문화예술의 창달과 복지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“<u>금산문화의 집</u>”과 “<u>추부문화의 집</u>”(이하 “<u>문화의 집</u>”이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위치) “<u>금산문화의 집</u>”은 <u>충남 금산군 금산읍 방아동4길 17</u>에, “<u>추부문화의 집</u>”은 <u>충남 금산군 추부면 하마전로 31</u>에 둔다.</p> <p>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“<u>문화의 집</u>”이란 문화정보자료실, 문화시청각실, 문화창작실, <u>문화사랑방, 문화관람실</u>, 그 밖에 <u>안내데스크</u> 등을 설치한 주민이용 복합 문화공간을 말한다. 2. “<u>사용자</u>”란 <u>문화관람실을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람</u>을 말한다. 3. “<u>사용료</u>”란 <u>사용자가 문화관람실 사용료로 납부하는 요금</u>을 말한다. 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 <u>금산군 문화의 집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명칭 및 위치) <u>금산군 문화의 집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금산선유원: 금산군 금산읍 방아동4길 17</u> 2. <u>추부문화의 집: 금산군 추부면 하마전로 31</u> <p>제3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----- ----- <u>문화사랑방, 문화관람실 등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</u> ----- -----. 2. ----- <u>제8조에 따른 사용자</u> <u>허가를 받은</u> ----- -----. <p><삭 제></p>

제4조(사업) 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~ 4. (생략)
5.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 사업

제5조(관리운영) 금산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문화의 집 시설관리와 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둘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제6조(시설개방) 문화의 집은 무료로 개방한다. 다만, 문화관람실을 2일이상 연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1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7조(개방제한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.

1. 천재지변,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
2. 시설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과 파손이 예상될 때
3. 시설의 개·보수 및 증축

제8조(사용허가) ① 개인 또는 단체가 문화관람실을 사용하고자 할

제4조(사업) 금산군 문화의 집-----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-----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-----

제5조(관리운영) -----
----- 금산군 문화의 집 -----
프로그램 운영-----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시설개방) 금산군 문화의 집은 무료로 개방한다.

제7조(개방제한) -----
-----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산군 문화의 집 -----.

1. 천재지변이나 -----
----- 불가능한 경우
2. 시설의 유지·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
3. 그 밖에 군수가 개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8조(사용허가) ① 군수는 금산군 문화의 집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

때에는 사용 예정일 10일전까지
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
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5일전까지
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② (생 략)

제9조(허가취소 등) ① 군수는 다음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
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
수 있다.

1.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시행규칙
을 위반하였을 때
2.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
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
3.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
할 때

위 내에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시
설을 일정 기간 대관하여 사용하
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
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 예정일 10
일 전까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
하며,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
는 경우에는 사용 예정일 5일 전
까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. 이
경우 군수는 사용허가서를 신청인
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
③ 사용허가 신청서, 사용허가 변
경 신청서 및 사용허가서의 서식
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④ (현행 제2항과 같음)

제9조(사용허가취소 등) ① -----
----- 해당하는 경
우에는 사용을 승인하지 않거나,
이미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을
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시킬 ---.

1. ----- 규칙을 위반한
경우
2. -----
----- 경우
3. ----- 사
용하는 경우

<신 설>

4.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

② (생략)

제10조(사용료납부 및 반환) ① 제8

조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.

1. 제7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

2.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허가취소원을 제출한 때에는 사용료의 50% 반환

제11조(사용료의 감면) 다음 각 호의

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국가, 지방자치단체(군)가 직접 사용할 때

2. 「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보훈단체

4. 정치적·종교적 행위나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

6. -----
경우

②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<삭 제>

제12조(사용자의 설비) ① 사용자가
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
자 할 때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
사용자부담으로 설비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
사용기간만료와 동시에 사용자부
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
하여야 한다.

③ (생략)

제13조(사용자의 변상책임) ① 사용
자는 사용기간중의 시설 및 설비
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
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16조(운영위원회) ① 군수는 문화
의 집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
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
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구성 등 그 밖의 운영
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
정한다.

제17조(운영위탁) ① 군수는 문화의 집
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
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예술
관련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
를 위탁하여 운영·관리할 수 있다.

제12조(사용자의 설비) ① -----

----- 사
용자 부담-----.

② -----
사용기간 만료----- 사용자 부담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사용자의 변상책임) ① ----
-- 사용기간 중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6조(금산군 문화의 집 운영위원
회 설치 등) ① ----- 금산군 문
화의 집----- 금산군 문화
의 집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
회”라 한다)-----.

② 운영위원회-----

-----.

제17조(운영위탁) ① ---- 금산군
문화의 집-----

-----.

②·③ (생략)

제19조(정기휴무) 문화의 집의 정기
휴무일은 다음과 같다.

1. 공휴일
2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무일

제20조(비용보조) 군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문화의 집 운영·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

제21조(준용) 사용료 및 변상금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.

제22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19조(휴관일) ① 금산군 문화의 집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공휴일
2. 그 밖에 군수가 금산군 문화의 집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

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군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.

제20조(비용보조) -----
----- 금산군 문화의 집 -----
-----.

제21조(준용) 변상금 -----

-----.

<삭 제>

관 계 법 령

「지방자치법」

- 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-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